

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I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912호, **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3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II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 증액 및 신규사업 편성 등 2023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2개 세부사업, 2,168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조정내역			
	당초 (A)	변경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체육진흥기금	12,179	14,347	2,168	17.8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9,732	9,988	256	2.6
전문체육 육성	9,732	9,988	256	2.6
태릉라이플사격장 운영	-	256	256	
시민생활체육 진흥	592	592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1,845	3,757	1,912	103.6
보전지출	1,845	3,757	1,912	103.6
여유자금 예치	1,845	3,757	1,912	103.6
행정운영경비	10	10	-	-

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2,179	14,347	2,168
전입금	9,043	9,043	-
이자수입	1,215	1,215	-
예치금회수	1,921	4,089	2,168

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
계	12,179	14,347	2,168
비용자성사업비	10,324	10,580	256
행정운영비	10	10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1,845	3,757	1,912

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 21억 6,8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21억 6,8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19억 1,200만원)와 신규사업인 태릉라이플 사격장운영(2억 5,600만원)에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¹⁾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103.6%, 19억 1,2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〈표 3-1〉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 사업 / 단위 사업 / 세부 사업	당 초 (A)	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 합 계	12,179	14,347	2,168	17.8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9,732	9,988	256	2.6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1,845	3,757	1,912	103.6
보 전 지 출	1,845	3,757	1,912	103.6
여 유 자 금 예 치	1,845	3,757	1,912	103.6
행정운영경비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	10	10	-	-
시 민 생 활 체 육 진 흥	592	592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3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,
②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3. 5.30) 재구성

○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수·지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4조(기금의 용도)

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체육지도자와 우수선수 육성 사업
2.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3.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및 가맹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
4. 체육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
5. 전국체육대회, 전국장애인체육대회, 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사업
6. 야구장 시설 등 인프라 개선 및 야구발전에 필요한 사업
7.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이나 활동